

기금운용심의회 운영규정

전문제정 2018.06.28. 개정 2019.04.17. 개정 2022.03.17.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혜전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기금·자금운용의 안정성 및 수익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기금·자금운용을 위해 설치하는 기금운용심의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기능)

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심의·의결한다.

- ① 기금·자금운용에 관한 지침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- ② 기금·자금운용에 관한 계획 수립
- ③ 기금·자금운용 대상상품 선정 및 정보자료 조사
- ④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<신설 2019.04.17.>
- ⑤ 그 밖에 기금·자금운용과 관련된 주요 사항

제3조 (구성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관련 분야의 교직원 및 외부 전문가 등 15인 이내로, 교원, 직원 및 재학생은 각 각2명 이상, 외부 전문가는 1명 이상 포함하여 위원을 위촉하며, 위원장은 총장으로 한다. <개정 2022.03.17.>
 1. 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·직원 및 재학생
 2.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
 3. 그 밖에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
-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, 간사는 본교의 회계팀 직원으로 한다.<개정 2019.04.17.>

제4조 (임기)

위원의 임기는 2년을 하되 연임 할 수 있다.

제5조 (위원장 등의 직무)

-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.
- ②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금융정보에 관한 의견을 자문하게 할 수 있다.
- 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실무를 관장한다.

제6조 (회의 및 의결)

-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- ② 회의는 기금운용에 대하여 1년 단위로 검토·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한다. 단,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 할 수 있다.<개정 2019.04.17.>
- ③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 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2/3이상 찬성으로 심사·의결한다. 단 가부 동수 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7조 (회의록)

-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- ② 회의록은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고, 위원 중 3인 이상을 호선하여 간(間)서명을 한다.

제8조 (관계부서의 협조)

위원회는 관계부서에 자료 제출이나 제반 필요한 사항에 관한 협조를 요구 할 수 있다.

제9조 (자문단)

기금·자금운용의 전문성과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.

제10조 (비밀유지 및 면책)

- ① 항상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, 업무상 알게 된 투자정보, 기타 기밀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위원회의 위원은 기금·자금운용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·의결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였을 경우 손실 발생만의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.

제11조 (연구비등)

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비 및 회의비를 지급 할 수 있다.

제12조 (사무관장)

위원회의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관장한다.<개정 2019.04.17., 2022.03.17.>

제13조 (운영세칙)

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 (2018.06.28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8년 06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

이 규정 이전에 시행되었던 기금·자금운용위원회 운영규정은 이 규정의 시행일부터 폐지

한다.

부 칙 (2019.04.17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9년 04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03.17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년 03월 17일부터 시행한다.